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김태규 · 김기현
윤한홍 · 김예지 · 박성훈
김용태 · 서천호 · 김승수
김위상 · 박정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.

이러한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,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.

이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,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,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·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

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.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 특례) ① 경찰청장등은 실종에 관한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, 영상 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·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, 종결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 및 종결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 특례) ① 경찰청장등은 실종에 관한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,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·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, 종결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 및 종결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</u>
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